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878

제출일자 : 2026. 9. 28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. 12. 31.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·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함에 따라『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 설 규 모	종사자수	비 고
근로자복지관	논공읍 논공로 697-13	대지 991㎡, 건물 지상3층 (927㎡)	3명	

나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- 근로자 상담 : 법률, 근로조건, 회계 상담 등
-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
-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·교육 사업
-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-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
-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 제공

다. 조직 및 구성

구 분	계	관장	사무장	직원	
인 원	3	1	1	1	

라. 위탁기간: 2년(2027. 1. 1. ~ 2028. 12. 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심의

바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2026. 9. : 계획 수립

- 2026. 9. :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·의결 및 군의회 동의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별도첨부

아. 성과평가 결과

- 적정(평균 88점)

※ 첨부자료 참조

자. 향후일정

- 2026. 10. ~ 11. :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

- 2026. 12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)

-「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1조(위탁운영)

-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운영비 : 77,194천원

(인건비 : 75,500천원 / 경상사업비 : 1,694천원)

참 고 **상위 및 관계법령**

▢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▢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 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

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▢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▢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1조(위탁운영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
▢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붙임 1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

1 기본 검토사항

대상사무	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위탁
민간위탁 추진목적	○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 ○ 노사문제해결 및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과 각종 노동상담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
위탁근거	○ 법적 근거 -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 -「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 -「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위탁내용	○ 추진경위 - 달성군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. ○ 추진현황 - 07. 03. 14. ~ 09. 03. 13. : 최초 위탁(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) - 1 ~ 10차(07년 ~ 26년) : 위탁 계약(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) ○ 재위탁 예정기간 : 2년 (2027. 1. 1. ~ 2028. 12. 31.) ○ 위탁내용 - 근로자 상담 : 법률, 근로조건, 회계 상담 등 -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-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·교육 사업 -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-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 -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 제공

적 정 성 검 토	○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- 건립목적이 근로자 복지증진 취지에 맞게 근로자 단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가능 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- 근로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- 노사관계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 ○ 경제적 효율성 - 군의 직접 운영에 따른 인적·물적 부담 경감 - 적절한 운영 예산편성으로 효율성 확보 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- 각종 노동상담, 임금 및 퇴직금 체불, 부당해고,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설명, 산업재해, 최저임금, 남녀평등,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, 직업훈련,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 - 의장 :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- 부의장 및 국장 : 단위조합 대표자로서 노사관계 풍부한 경험이 있음 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 - 노동상담소 운영, 근로자 교육 및 각종 화합 행사 등 성과 측정 가능 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- 분기별 보조금 정산 서류 검토 및 연간 1회 자체 감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기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	○ 수탁기관명 : 한국노총 대구본부 달성지역지부 ○ 수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 ○ 위탁금 : 77,194천원 ○위탁기관 선정방법 :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
수탁기관 선정방법	○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심의

심 의 의 결 서

심의안건	▸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적정 여부
심의요지	▸ 심의대상 시설 및 수탁기관 - 시 설 명 :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- 수탁기관 :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
의결내용	▸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15조에 따라,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민간위탁(재위탁)이 적정 / 부적정 함을 의결함.

위와 같이 의결한다.

2026. 9. 16.

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

위 원 장

부위원장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평 가 집 계 표

심사결과(점수)		의원	의원	의원	의원	의원	의원
합계	평균						
528	88	90	90	80	94	89	85

위와 같이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.

2026. 9. 16.

위 원 장

부위원장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